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2호 2023. 4. 27.(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0호)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1호)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2호)

규 칙

-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예천군 규칙 제1319호)

고 시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53호)

공 고

-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68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 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0호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청구인서명부”를 “주민투표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명부”를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사항은 위원회”를 “사항은 심의회”로 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의”를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예천군(○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리.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예 따라 재외국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항)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 다. 주민투표 대상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제4조)
- 라.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 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리
· 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에 신설(안 제8조제2항)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및 개정(안 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1호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 따라 군수”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정비(안 제1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신설 (안 제2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조문 내용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2호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예천군 평생학습관 등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증의 교부 등)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수납된 수강료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강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6.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수강료 반환) ①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및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7조에 의거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23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24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지원)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예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구 분	기준	요 금	비 고
평 생 교 육 강 좌	1개 프로그램	10,000원	•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기술, 자격취득 등 •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강 의 실	평일주간 1회	1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2시간을 초과시에는 매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 토요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별표 2】

예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범위
(수강료)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료) 제19조제2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수강료)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2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제19조제2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1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반액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수 강 생	강 좌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 강 료	금 원정 (₩)			
면제(반환)액	금 원정 (₩)			
실제 수강료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	거 래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면제(반환)사유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통)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사 용 목 적			사 용 예 정 인 원	
사 용 료	원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

사 용 시 설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사 용 료	원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허 가 조 건

1.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비품 등)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료 면제(반환)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행 사 내 용				
면 제 (반 환) 사유				
면 제 (반 환) 액				
반 환 계 좌	거 래 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개정이유

- 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
- 나. 예천군 여성회관을 여성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상의 제반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근거 마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11조)

- 예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예천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안 제22조)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방안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23조 ~ 안 제25조)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지원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19호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 예천군 여성회관을 여성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역

위치			지적 (㎡)	산림보호 구역면적 (㎡)	지정해제 면적 (㎡)	산림보호 구역종류	지정 년월일	산림소유자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용문	내지	산81	1,336,673	1,283,190	3,143	경관보호 구역	2019.11.28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대한불교조 계종용문사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아목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054-65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교통안전 관련 안전에 따라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조, 제6조)

-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 임기 및 개최 빈도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규정 유연화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반영(안 제3조)

- 위촉직 위원에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다.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 직함 현행화(안 제3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jc1021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3) 팩스 : 054-650-65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전화: 054-650-65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제5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교통관리팀장이”로, “교통지도”를 “교통관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개최)”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3조(구성) ① ----- ----- ----- <u>구성하며,</u> <u>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u>다음과 같다</u> .	② ----- ----- <u>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u>경찰서방법교통과장</u>	5. <u>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u>
6. <u>교육청 학무과장</u>	6. <u>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u>	8. ----- ----- <u>자</u>
③ <u>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u>	<u><삭 제></u>

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생략)

제5조(간사와 서기) ① -----

-- 교통관리팀장이 -----

----- 교통관리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